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21. 1. 12.

양형위원회

I. 개관

1. 의의

-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로서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의미
- 현행 법령상 환경범죄는 다수의 개별 환경관계법에 규정된 환경범죄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¹⁾에 규정된 환경범죄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범죄단속법은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과실범),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누범의 가중),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10조(양벌규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2. 특징

- 환경침해행위는 ① 매개체인 환경재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가하고(침해의 간접성), ② 환경재의 특수성으로 한 번의 오염이 확산·전파되며(침해의 전파성), ③ 그 원인행위의 완만한 진행으로 피해의 발생과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운(침해의 완만성) 특징이 있음

1) 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함

-
- ▣ 침해의 원인이 복잡적이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장기간이거나 누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움
 - ▣ 행위자가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을 가진 사안이 많은 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한 다수에게 미침

3. 보호범의

- ▣ ①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범의 것으로 보는 견해(인간범의설)와 ②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재 또는 환경 그 자체나 환경인자, 예컨대 물, 토양 내지 대기를 독자적인 보호범의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환경재설)가 대립
 - 환경범죄단속법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태계 침해행위 자체도 처벌함으로써 두 견해를 절충한 ‘이중적 보호범의이론’에 입각
 - 반면 개별 환경관계법에 규정된 환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전제 사항

- ▣ 대상 특별법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200여개에 이르는 광의의 환경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의 실제 성격, 빈도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② 하수도법, ③ 대기환

2)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경보전법, ④ 소음·진동관리법, ⑤ 물환경보전법, ⑥ 해양환경관리법, ⑦ 폐기물관리법,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³⁾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정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완료

2.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조문별 선고 건수

※ 아래 통계는 2015. 1. 1.~2019. 12. 31. 제1심 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죄, 징역형 선고인 양형조사대상 492건(사건 수는 피고인 수 기준)과 운영지원단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63건(양형자료조사 대상 아님) 등 합계 555건을 대상으로 함

가. 가축분뇨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48 1호 (3건)	<p>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 제1항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p>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p>

3)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p>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p>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p>	
2호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3호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	
4호	<p>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 제9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25조 제9항 제4호~제7호〉</p> <p>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p>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p>축분뇨 처리의 공법상(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5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 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6호 (3건)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49	1호 (6건)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2호 (35건)	
	3호	
	4호 (3건)	
	5호	
	6호 (1건)	
	7호 (1건)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	
8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금지명령을 불이행	
9호 (3건)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	
10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1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12호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 영위	
§ 50	1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불이행
	2호 (2건)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3호 (2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4호 (7건)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5호 (7건)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호 (9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호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8호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		
9호 (2건)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10호	공공처리시설자등으로서 제25조 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불이행		
11호 (12건)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2호 (1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서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13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 영위		
14호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 대여		
15호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영위		
16호	제3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51	1호	300만 원 ↓ 벌금	
	2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호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	
	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호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	
	7호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 미준수	
	8호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행위	
	9호	제37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호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으로서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나. 하수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75	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9조 제 2항></p> <p>2. 제 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p>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중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호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	
§ 76	1호	제1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19조 제2항>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1의 2호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2호 (1건)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3호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4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영위	
	5호	제45조 제7항·제51조 제3항·제52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 대여	
	6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영위	
	7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영위	
	8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영위	
§ 77	1호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	
	2의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2의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3호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제해시설의 설치, 대체·철거 또는 수리 등)을 불이행	
4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5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 위반	
6호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7호	<p>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제39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div>	
8호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9호 (1건)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10호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하는 행위	
11호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 개선명령 위반	
1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호	제49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호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호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78	제4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200만 원 ↓ 벌금

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89	1호 (3건)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7년 ↓ 징역 (1억 원 ↓ 벌금)
	2호 (2건)	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3호 (7건)	제31조제 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1조 제1항></p> <p>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div>	
	4호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	
	5호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	
	5의 2호 (10건)	제38조에 따른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불이행	
	6호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6의 2호	제46조 제4항을 위반(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여 자동차를 제작	
	7호 (2건)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7의 2호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7의 3호	제55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8호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	
	9호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10호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호	제74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2호 (1건)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13호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	
§ 90	1호 (40건)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1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3호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호	제32조 제3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 제3항>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의 2호	제38조의2 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불이행	
	4의 3호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미측정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의 4호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9조 제2항>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5호	제41조 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	
	6호	제44조 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불이행	
	7호	제51조 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을 위반	
	10호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	
	11호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	
§ 90의 2		제41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 91	1호	제30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제32조 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	
	2의	제3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	
2의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2의 4호	제32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	
2의 5호 (1건)	제41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	
3호	제43조 제4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	
3의 2호	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3의 3호	제44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3의 4호	제44조의2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3의 5호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	
4호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4의 2호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5호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요구	
6호	제6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	
7호	제6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호	전문정비사업자로서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	
	9호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호	제74조 제5항에 따른 규제(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	
	11호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로서 제74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12호	제74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검사대행기관(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업무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12의 2호	자동차제작자로서 제7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12의 3호	제76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 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재사용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 영위	
	12의 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12의 5호	제76조의1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	
	13호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91의 2	1호	제58조 제12항에 따른 표지(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행위	500만 원 ↓ 벌금
	2호	제5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92	1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명령(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300만 원 ↓ 벌금
	2호	제32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	
	3호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	
	3의2호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호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	
	4의2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4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	
	6호	제43조제 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호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8호	제44조 제5항에 따른 조치(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설치 등)를 하지 아니한 경우	
	9호	제50조의2 제2항 및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	
10호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		
11호	제62조 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불이행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2호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호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호 제7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 93	제40조 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200만 원 ↓ 벌금

라.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56	1호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위반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	
	3호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인증(제작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4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경우	
§ 57	1호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2건)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3호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	
	4호 제23조 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5호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5의 2호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5의 3호	제34조의3 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금지명령)을 위반	
	5의 4호	제44조 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지명령)을 위반	
	6호	제44조 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경우	
§ 58	1호 (2건)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6개월 ↓ 징역 (500만 원 ↓ 벌금)
	4호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	
	5호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운행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6호	제38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	

마. 물환경보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75	1호 (13건)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7년 ↓ 징역 (7,000만 원 ↓ 벌금)
	2호	제3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호	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8조 제2항></p> <p>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p> </div>	

		<p>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p>	
§ 76	1호	제4조의6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불이행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3건)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호 (25건)	<p>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38조 제1항></p> <p>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p>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4호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5호 (18건)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38조의3 제1항>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호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
7호 (1건)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
8호 (5건)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9호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55조 제1항> 1. 제51조 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77 (3건)	1호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 영위	
§ 78	1호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등의 조치명령 위반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2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3호 (6건)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경우	
	5호	제15조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	
	6호	제17조 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	
	7호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명령을 위반	
	8호	제37조제 1항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	
	9호	제37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9의 2호	제38조의2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10호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	
	10의 2호	제38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	
	11호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12호	제5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미설치	
	13호	제53조 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	
13의 2호	제53조의3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		
13의 3호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		

	14호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15호	제6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	
	17호	제68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79	1호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	500만 원 ↓ 벌금
	2호	제62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호	제68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80	1호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미부착	100만 원 ↓ 벌금
	2호	제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바. 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26	1호 (1건)	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불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127	1호 (9건)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2건)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3호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해양오염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	
	4호	제6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	
	5호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	
§ 128	1호 (1건)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2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3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4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5호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6호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7호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유해방오시스템(유해방오도료를 사용한 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하지 아니한 자
8호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호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
10호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 영위
11호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12호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미 실시
13호	제82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14호	제84조 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제85조 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15호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
16호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16의 2호	제110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판매	
	17호	제11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17의 2호	제110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	
	18호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129 ①	1호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1건)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출한 자는 제외한다)	
	3호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4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	
	5호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	
	6호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	
	7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	
	8호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9호	제4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호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11호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	
	12호	제8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	
	13호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 129 ②	1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	1년 ↓ 징역 (500만 원 ↓ 벌금)
	2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	
	3호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	
	4호	제2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	
	5호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	
	6호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	
	7호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게 한 경우	
	8호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	
	8의 2호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	
	9호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조치명령)을 불이행	
	9의 2호	제6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	
	10호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1호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을 위반	
	12호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사용	
13호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제조하거나 수입		

14호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	
15호	제11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16호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사. 폐기물관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63	1호 (66건)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경우	7년 ↓ 징역 (7,000만 원 ↓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可
	2호 (40건)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3호	제1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 64	1호 (24건)	제13조의3 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경우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3호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경우	
	4호 (1건)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	
	5호 (46건)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7호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	
	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8의 2호	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경우	
	8의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9호	제31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불이행	
§ 65	1호 (15건)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제1호, 제6호, 제11호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2호 (7건)	제1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호	제13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	
	4호 (3건)	제13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호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경우	
	6호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8호	제17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경우	
	9호	제17조의5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호 (4건)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호 (16건)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14호 (2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	
	15호	제25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호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	
	17호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	
	18호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19호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19의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9의 3호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경우	
	20호 (1건)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	
	21호 (4건)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호에 따른 명령(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22호	제47조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22의 2호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을 불이행	
	23호 (14건)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24호	제50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	
	25호	제50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부적합 판정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불이행	
	26호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호	제50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6	1호 (12건)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1의 2호	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1의 3호	제13조의5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한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2호 (9건)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3의 2호	제14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미준수	
	3의 3호	제15조의2 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호 (1건)	제17조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4의 2호	제1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 3호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 4호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6호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7호	제25조 제7항의 조건(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붙인 필요한 조건)을 위반	
8호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9호 (13건)	제25조 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5조 제9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금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	
9의 2호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	
9의 3호	제25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9의 4호	제25조의2 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경우	
10호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	
11호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12호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12의 2호	제3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	
12의 3호	제3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	
12의 4호	제30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12의 5호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경우	
13호 (1건)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4호	제31조 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이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명령을 미이행	
17호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18호	제39조제 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호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아. 건설폐기물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62	1호 (1건)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 63	1호 (2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2의 2호 (1건)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3호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	
	4호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	
	5호 (3건)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6호	제25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	
7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8호	제2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	
	9호	제36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	
	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1호 (2건)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 64	2호	제21조 제7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3호	제25조 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	
	4호	제27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3.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기준

- ▣ 법정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 개별 환경관계법상 처벌 규정의 법정형(징역형)은 ‘7년 이하’가 가장 높은 수준임. 그 밖에 죄책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1년 이하’ 등으로 구분되어 대체로 법정형이 높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낮음
 - 선거범죄를 제외한 기존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양형기준은 설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범죄는 설정대상에서 제외함

- ▣ 실제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범죄발생의 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 개별 환경관계법에 처벌 규정이 다수 존재하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신고 사례가 존재함
- 신고 사례가 없는 범죄는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신고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 범죄를 참조하여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행위 태양 및 죄질 고려

- 환경범죄는 대체로 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중간배출 등 직접적 환경침해행위, ②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설치·영업행위, ③ 기타 행정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분류됨
- 대체로 ①>②>③의 순으로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시 ①과 ②는 포함하되 ③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 법률별 양형기준 설정범위 포함 여부

1) 가축분뇨법

■ 통계⁴⁾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건수
48조 1호 ⁵⁾	5년 ↓	제11조 ⁶⁾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⁷⁾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3

4)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개별 범죄의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건수를 표시함. 이하 다른 범죄에서도 같음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호	제28조 제1항 ⁸⁾ 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49조	1호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6
	2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5
	4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6호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로서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1
	7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	1
	9호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	2
	2년 ↓		
50조	2호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2
	3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4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7
	5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6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9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2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11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2
12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서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1

■ 검토

-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5년 이하

-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8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가축분뇨 등 공

5) 색깔 표시 부분이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임. 이하 다른 범죄에서도 같음

6)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7)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2년 이하
 - ❑ <4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 ❑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 <49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1년 이하
 - ❑ <50조 3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 ❑ <50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 ❑ <50조 5호> 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 <50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 <50조 9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 ❑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다음의 범 죄는 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2년 이하
 - ❑ 49조 6호, 7호, 9호
- 법정형 1년 이하
 - ❑ 50조 2호, 12호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 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2) 하수도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76조 2호	2년 ↓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1
77조 9호	1년 ↓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1

■ 검토 - 불포함

- 선고 사례가 부족한 점,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75조 위반 범죄(5년 이하)에 대한 선고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제76조 제2호 범죄는 전형적 환경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제77조 제9호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 로 낮은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3) 대기환경보전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89조	1호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 ⁹⁾ 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
	2호	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 ¹⁰⁾ 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2
	3호	제31조제 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1조 제1항></p> <p>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p> </div>	7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지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5의 2호	제38조11)에 따른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불이행	10
	7호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2
	12호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1
90조	1호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40
	2호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방지지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1
91	2의 5호	제41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	1

■ 검토

●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

9)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제26조(방지지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지설(이하 "방지지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지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지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7년 이하
 - ❑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 <89조 2호>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 ❑ <89조 3호>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 법정형 5년 이하
 - ❑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 <90조 2호>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다음의 범주는 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7년 이하
 - ❑ 89조 7호, 12호(법정형 높으나 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 <89조 5의2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행정 명령 불이행이므로 환경범죄로 보기 어려움)
- 법정형 1년 이하
 - ❑ 91조 2의5호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주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4) 소음·진동관리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57조	1호	1년 ↓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2
58조	1호	6월 ↓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2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 검토 - 불포함

- 선고 사례가 있는 두 범죄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로써 전형적인 환경범죄에 해당하기는 함
- 그러나 두 범죄 모두 선고 사례가 각각 2건으로 부족한 점,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56조 위반 범죄(3년 이하)에 대한 선고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6월 이하’로 낮아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5) 물환경보전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75조	1호	7년 ↓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 ¹²⁾ 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13
76조	2호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
	3호	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5
	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위반 범죄)	18
	7호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	1
	9호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5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77조	1호	3년 ↓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3
78조	2호	1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2
	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경우	6

■ 검토

-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모두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7년 이하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5년 이하
 - <76조 2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법정형 3년 이하
 - <77조 1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법정형 1년 이하
 - <78조 2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78조 3호> 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래 범죄는 행정명령 위반에 불과하여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

12)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외

- <76조 5호>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위반 범죄
- <76조 7호> 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 위반
- <76조 9호>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

6) 해양환경관리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126조 1호	5년 ↓	22조 제1항 및 제2항3)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1
127조 1호 2호	3년 ↓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9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2
128조 1호	2년 ↓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1
129조 14호 2항	1년 ↓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	1

▣ 검토

-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죄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5년 이하

- <126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법정형 3년 이하

13)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 ❖ <127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 <127조 2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법정형 2년 이하
- ❖ <128조 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다음의 범주는 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1년 이하
- ❖ 129조 제2항 14호(법정형 및 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행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7) 폐기물관리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건수
63조	1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경우	66
	2호		40
64조	4호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1
	5호 (14)		60
65조	1호	제13조 ¹⁵⁾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15
	11호 (16)	제18조 제1항 ¹⁷⁾ 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23
	14호 (18)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	5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20호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	1	
	21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호에 따른 명령(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4	
	23호 19)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부적정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18	
66조	2년 ↓	1호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12
		2호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9
		4호	제17조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1
		9호	제25조 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13호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

■ 검토

-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14)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가 현행 법률 제64조 제5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15)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가 현행 법률 제65조 제11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17)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8)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가 현행 법률 제65조 제14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19)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가 현행 법률 제65조 제23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
- 법정형 7년 이하
 - ❑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 ❑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 법정형 5년 이하
 - ❑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
 - 법정형 3년 이하
 - ❑ <65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법정형 2년 이하
 - ❑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다음의 범 죄는 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5년 이하
 - ❑ 64조 4호(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법정형 3년 이하
 - ❑ <65조 11호> 무허가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 등(행정명령 불이행 유형으로 제외)
 - ❑ <65조 14호> 허가사항 무단변경(상동)
 - ❑ <65조 20, 21, 23호> 각종 명령 불이행(상동)
 - 법정형 2년 이하
 - ❑ 66조 4호, 13호(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 66조 9호(신고 사례는 상당수 있으나 행정형벌 성격 강하고 범죄 유형 다양 함)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 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

8) 건설폐기물법

▣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62조	1호	5년 ↓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1
63조	1호	3년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
	2의 2호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
	5호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3
	11호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2

▣ 검토

-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모두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위반범죄의 유사한 범죄와 동일하게 양형기준을 설정
 - 법정형 5년 이하
 - ❑ <62조 1호>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
 - 법정형 3년 이하
 - ❑ <63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래 범죄는 행정명령 위반에 불과하여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 ❑ <63조 2의2호> 건설폐기물의 무단운반
 - ❑ <63조 5호> 재위탁 금지규정 위반
 - ❑ <63조 11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9) 기타 - 환경범죄단속법 등

▣ 환경범죄단속법위반범죄 - 불포함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제3조 제1, 2항²⁰) 등이 적용된 사례는 찾기 어렵고,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4조 제2항²¹)이 적용된 사례가 일부 확인됨
- 위 가중처벌규정을 제외하고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양형기준만을 설정하는 것은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환경범죄단속법위반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 기타 환경관계법위반범죄 - 불포함

- 앞서 검토한 개별 법령 이외에 다른 환경관계법령과 관련하여서는 양형기준 설정이 가능한 정도의 집적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앞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별 법령의 대상범위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바람직

III. 범죄유형 분류

20)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협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환경범죄 유형 분류 기준

가. 대유형 분류

- 개별 환경관계법의 체계에 따라 ①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② 대기환경 범죄, ③ 물환경 범죄, ④ 해양환경 범죄, ⑤ 가축분뇨 범죄로 분류
- 건설폐기물 범죄는 세부 범죄 유형이 폐기물 범죄와 거의 일치하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폐기물 범죄와 함께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
- 해양환경 범죄는 선고 건수가 많지 않고 물환경 범죄와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법정형, 세부 범죄 유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

나. 소유형 분류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되는 세부 범죄 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 ☞ 각 세부 범죄 유형 별로 선고 사례가 많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사이에 죄질, 행위 유형 등에 따라 유의미한 양형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찾기 어려움. 구성요건별로 유형을 분류하면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 소유형이 다수 존재하게 됨
- 각 소유형에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다수의 개별 범죄가 포함되기

는 하나, 법정형, 양형통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상 이들을 하나의 소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적용법조별로 소유형을 분류하게 되면,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소유형이 다수 존재하게 되고, 향후 설정 대상 범위를 추가하게 되면 소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3. 유형 분류 결과

01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폐기물관리법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법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폐기물관리법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법 62조 1호>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

- 제3유형(법정형 3년 이하)

<폐기물관리법 65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건설폐기물법 63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 제4유형(법정형 2년 이하)

<폐기물관리법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같은 법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02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89조 2호>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89조 3호>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90조 2호>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03¹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 <76조 2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제3유형(법정형 3년 이하)
 - <77조 1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제4유형(법정형 1년 이하)
 - <78조 2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78조 3호> 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04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폐기물 무단배출 /과실에 기한 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 <126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제2유형(법정형 3년 이하)
 - <127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127조 2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제3유형(법정형 2년 이하)
 - <128조 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05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48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2유형(법정형 2년 이하)

<4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49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3유형(법정형 1년 이하)

<50조 3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50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50조 5호> 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50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50조 9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IV. 형량 범위 검토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 일반적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적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 환경범죄 특유한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 경우 선고 건수가 충분하지 않은 범죄가 상당수 존재하여 경험적 접근방식에 의한 형량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선고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먼저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환경범죄 중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형량범위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함

2.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가. 법정형이 7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법위반범	변호사 아닌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죄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나. 법정형이 5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 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없음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도박장소.공간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불법게임물 등 유통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채권추심법위반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없음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6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채권추심법위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미만	-10월	6월 - 1년	10월 - 1년2월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2월	1년 - 2년
		50억 원 이상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경륜.경정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라. 법정형이 2년 이하인 범죄의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3. 형량 범위 검토

가.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1) 형량 분포²²⁾

2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II(2020. 9. 14.)를 근거로 하되, 제10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설정 범위 결과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건만으로 추리고, 판결문을 직접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한 결과임. 이하 환경범죄 형량 분포에 대한 통계는 모두 같음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8	24	36		
폐기물 관리법 / 건설폐 기물법	63조	수	1	1	9	2	31	16	7	15	2	-	1	3	1	89	8.64
		비율	1.1	1.1	10.1	2.2	34.8	18.0	7.9	16.9	2.2	-	1.1	3.4	1.1	100.0	
	64조/ 건설6 2	수	-	-	6	-	27	11	4	9	1	1	2	2	-	63	8.49
		비율	-	-	9.5	-	42.9	17.5	6.3	14.3	1.6	1.6	3.2	3.2	-	100.0	
	65조/ 건설6 3	수	-	-	1	-	3	4	4	2	1	-	2	-	-	17	9.88
		비율	-	-	5.9	-	17.6	23.5	23.5	11.8	5.9	-	11.8	-	-	100.0	
	66조	수	-	-	6	-	10	2	-	1	-	-	-	-	-	19	5.89
		비율	-	-	31.6	-	52.6	10.5	-	5.3	-	-	-	-	-	100.0	
전체	수	1	1	22	2	71	33	15	27	4	1	5	5	1	188	8.43	
	비율	0.5	0.5	11.7	1.1	37.8	17.6	8.0	14.4	2.1	0.5	2.7	2.7	0.5	100.0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7↓)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5↓)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3↓)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2↓)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법정형 : 7↓

- 평균형량 8.64월이므로 기본영역 하한을 8월로 설정하고, 형량 분포,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8월-2년' 으로 설정
- 가중 영역 상한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4년으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년6월-4년' 으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4월-1

년' 으로 설정

■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법정형 : 5↓

- 평균형량이 8.49월인 점, 형량 분포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8월-1년 2월' 로 설정함
-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2년이나, 체계 정합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2년6월' 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년-2년6월' 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10월 이하' 로 설정

■ 제3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법정형 : 3↓

- 평균형량이 9.88월인 점 및 형량 분포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6월-1년' 으로 설정함(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형량은 제1유형, 제2유형보다 더 높으나 법정형과 죄질,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 등 감안하여 형량범위를 위 두 유형보다 낮게 설정함)
-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은 1년6월이나, 체계 정합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2년' 으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10월-2년' 으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8월 이하' 로 설정

■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법정형 : 2↓

- 평균형량이 5.89월인 점 및 형량 분포 등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4월-10월' 로 설정함
-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은 1년이나, 체계 정합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1년6월’로 설정하고,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 형량범위를 ‘8월-1년6월’로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6월 이하’로 설정

나. 대기환경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5	6	8	10	12		
대기환경 보전법	89조	수	1	-	6	2	-	-	9	6.22
		비율	11.1	-	66.7	22.2	-	-	100.0	
	90조	수	11	1	24	2	1	1	40	5.78
		비율	27.5	2.5	60.0	5.0	2.5	2.5	100.0	
전체	수	12	1	30	4	1	1	49	5.86	
	비율	24.5	2.0	61.2	8.2	2.0	2.0	100.0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7↓)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5↓)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 7↓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1(징역 7년 이하)과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이와 다르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양형자료조사 결과가 9건에 불과), 특별히 죄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

기도 어려움

▣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 5↓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주의 소유형 2(징역 5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다. 물환경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8	10	12	18		
물환경 보전법	75조	수	3	8	1	-	-	-	12	5.67
		비율	25.0	66.7	8.3	-	-	-	100.0	
	76조	수	6	6	4	2	6	2	26	8.46
		비율	23.1	23.1	15.4	7.7	23.1	7.7	100.0	
	77조	수	-	2	-	-	1	-	3	8.00
		비율	-	66.7	-	-	33.3	-	100.0	
	78조	수	2	2	-	2	1	-	7	7.43
		비율	28.6	28.6	-	28.6	14.3	-	100.0	
	전체	수	11	18	5	4	8	2	48	7.58
		비율	22.9	37.5	10.4	8.3	16.7	4.2	100.0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7↓)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5↓)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3↓)	- 8월	6월-1년	10월-2년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1↓)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 7↓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1(징역 7년 이하)과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 5↓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2(징역 5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법정형 : 3↓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3(징역 3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법정형 : 1↓

- 평균 형량(7.43월), 형량 분포 등을 고려하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인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감경 영역을 ‘4월 이하’로, 기본 영역을 ‘2월-8월’로, 가중 영역 하한을 6월로 각각 설정함
- 가중 영역 상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1년이 아닌 징역 10월로 정함
 - 법정형 상한이 1년인데,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으로 인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게 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음. 상한을 1년으로 정하게

되면 특별조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라. 해양환경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8	10	12	14		
해양환 경관리 법	126조	수	-	1	-	-	-	-	1	6.00
		비율	-	100.0	-	-	-	-	100.0	
	127조	수	2	4	1	1	2	1	11	8.00
		비율	18.2	36.4	9.1	9.1	18.2	9.1	100.0	
	128조	수	-	1	-	-	-	-	1	6.00
		비율	-	100.0	-	-	-	-	100.0	
전체	수	2	6	1	1	2	1	13	7.69	
	비율	15.4	46.2	7.7	7.7	15.4	7.7	100.0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5↓)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유해액체물질 등 배출(3↓)	- 8월	6월-1년	10월-2년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2↓)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 제1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법정형 :
5↓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2(징역 5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 제2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법정형 : 3↓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3(징역 3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 제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법정형 : 2↓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4(징역 2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마. 가축분뇨 범죄

1)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법률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6	8	10	12	18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수	-	-	3	1	-	-	1	1	6	8.00
		비율	-	-	50.0	16.7	-	-	16.7	16.7	100.0	
	49조	수	-	-	8	19	5	4	4	-	40	6.85
		비율	-	-	20.0	47.5	12.5	10.0	10.0	-	100.0	
	50조	수	1	1	13	14	1	4	3	-	37	6.08
		비율	2.7	2.7	32.4	37.8	2.7	10.8	8.1	-	100.0	
전체	수	1	1	24	34	6	8	8	1	83	6.59	
	비율	2.4	1.2	28.9	41.0	7.2	9.6	9.6	1.2	100.0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	---------	----	----	----

유형	구분(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5↓)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2↓)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1↓)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법정형 : 5↓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2(징역 5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제2유형(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법정형 : 2↓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소유형 4(징역 2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 제3유형(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법정형 : 1↓

-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3 물환경 범죄의 소유형 4(징역 1년 이하)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가.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함
- 다수 범죄에서 정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규정 외에 ‘단순 가담’의 취지를 포함
 - 환경범죄는 공범 비율(30.7%)이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주범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벌성 차이가 크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자의 역할,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그 가벌성을 구분할 필요성 있기 때문임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함. 행위불법이 가벼우므로 환경범죄에서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미신고 배출장치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장을 인수하여 조업을 계속한 사례,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이 유실되면서 유해물질이 유출된 사례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 있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결과 불법이 현저히 작은 점, 양형기준에서 ‘피해(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범죄군(재산범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이 있는 점,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실제 사례에서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신고 절차만을 누락한 때, ㉡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차수막과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된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의 토양 유출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때, ㉢ 기준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비가 오히려 피고인이 경작하는 농장의 비료로 사용된 때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대부분의 범죄에서 ‘농아자’가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규정되어 있음
- 최근 개정된 형법(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에서는, ‘농아자’를 대신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비록 개정 형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는 양형인자의 표현을 순화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도적으로 사용함

※ 개정 형법(2021. 12. 9. 시행 예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두지 않음
 - 환경범죄의 특성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의 범행이 일어나는 사례는 상정하기 쉽지 않음
 - 식품보건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 다수의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수, 내부 고발”에 관하여는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함

- 조직적 범행 양상을 띠 수 있는 환경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함.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 내부 고발”과 동등하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횡령·배임, 증거인멸·증인은닉, 사기, 증권·금융범죄, 공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도주·범인은닉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사기범죄, 공갈범죄, 폭력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환경범죄의 경우 공범 비율이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결과 불법이 현저히 크므로, 이를 특별

가중인자로 반영함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를 참조하되, 개별적으로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요소는 제외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 폐기물관리법은 사업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4호) 그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유해성이 특히 높은 지정폐기물을 무단투기·매립·소각·처리하는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함. 실제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이 확인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를 가중 처벌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도서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가중 처벌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된 일반 환경범죄를 ‘환경보호지역 내에서’ 범한 경우 상대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3)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
- 해당 및 반영 여부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기초로 판단 가능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과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 사이에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두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²³⁾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 유해식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경우 ‘적발 후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 유해식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경우 ‘적발 후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경우’를 ‘일반’ 감경인자로 반영함

4) 일반가중인자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환경범죄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실제로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이 상당수 있음
- 배출행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측면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행위자 입장에서 얻은 이익이 많다는 측면은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배출량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를 가중인자로 볼 필요는

23) 환경범죄는 ‘피해자’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있으나, 이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요소가 다수 있음(‘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 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등).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균형에 맞음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식품·보건범죄, 조세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환경범죄도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 증권, 선거, 변호사법위반, 게임물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환경범죄도 최초 단속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 혐의 증명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속 후 증거은폐 가능성이 높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나. 대유형 2 대기환경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유형 1과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대유형 1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아래는 대유형 2에 고유한 양형인자(대

유형 1과 논의가 다른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9호) 그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해성이 특히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다. 대유형 3 물환경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유형 1, 2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대유형 1, 2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라. 대유형 4 해양환경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유형 1, 2, 3과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대유형 1, 2, 3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마. 대유형 5 가축분뇨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의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유형 1~4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대유형 1~4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V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범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기환경 범죄의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지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